

의안번호	제391호
의결연월일	2017. 9. 4.

- 농공·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8. 25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17. 8. 28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9. 4.

제233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기획실장 홍석모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 농공·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여 폐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,
-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 동의 받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사업명 :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용역

○ 시설현황

구분	위치	규모	위탁비 (천원)	위탁기간	위탁업체	비고
합계	5개소		1,569,250			
예산일반 산업단지	삽교읍 산단3길 146	3,250톤/일	402,832	2014.09.01 ~ 2017.09.30	TSK워터(주) ,두현이엔씨(주)	
예당일반 산업단지	고덕면 오추리 232-1	1,500톤/일	471,803	시운전 중으로 9월 준공예정		
예산 농공단지	예산읍 예산산업 단지로 67-13	1,000톤/일	694,615	2015.08.01 ~ 2017.12.31	금강엔지니어링 (주)	
신암 농공단지	신암면 추사로 235-5	400톤/일				
관작 농공단지	예산읍 벚꽃로 388-4	300톤/일				

○ 위탁기간

-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: 2017.10. 1.~2020.12.31.(3년3개월)
- 예산관작신암농공단지 : 2018. 1. 1. ~ 2020.12.31.(3년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○ 예산일반산업단지등 5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,

- 「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와 「예산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」 제1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생 략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